13. 신규 교원 임용 내규

제정일 : 2007년 9월 12일

- 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<mark>본교</mark>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채용원칙)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국내외 석학이나 전문가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자를 특별 채용할 수 있다.
 - ② 교원의 신규채용은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3조(채용절차) 신규교원의 공개채용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.
 - 1. 초빙인원 및 초빙분야 확정
 - 2. 초빙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
 - 3. 서류심사
 - 4. 전공심사
 - 5. 강의평가
 - 6. 면접심사
- 제4조(초빙인원 및 초빙분야) ①초빙인원은 법정교원수, 교원확보율, 학교의 정책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.
 - ②초빙분야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- 제5조(초빙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) ①공개채용의 초빙공고는 지원마감일 1개월전까지 초빙분야, 초빙인원, 지원자격 등을 명시하여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자의 지원서류는 지원자격과 서류 검토를 거쳐 접수하며, 연구실적물 및 증빙서류는 예비심사를 거쳐 학과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에 대해서만 접수한다.
- 제6조(연구실적) ① 연구실적(학위논문 제외)은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것으로 한다. 다만, 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서 정한 국내 및 국제저명학술지의 게재예정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② 박사학위 취득예정 또는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원자는 박사학위논문을 연구실적으로 200%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각 심사단계별 학위논문의 인정비율과 적용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- ③ 연구실적은 제출된 것만 인정하고 경력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.
- 제7조(전공심사)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별표1)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공심사를 실시한다.
 - 1. 학력, 경력 및 교수능력평가(영어강의 등)는 인사위원 전원이 실시한다.

- 2. 연구실적에 대한 질적평가와 지원자의 전공과 초빙분야와의 전공일치여부는 초빙분야와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과 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3인 이상이 실시하되, 심사위원중 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.
- **제8조(면접심사)** ① 교원인사위원장은 서류심사 및 전공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의 상위후보를 선발하고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
 - ② 초빙분야별 면접위원의 구성과 평가비율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에 별도로 정한다.
- 제9조(심사결과의 공개) 지원자가 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채용이 완료된 이후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공개할 경우에도 평가자나 다른 지원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특별채용) ① 특별채용의 분야 및 인원은 대학 특성화분야 및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 - ② 특별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 - ③ 특별채용한 교원의 직위 및 호봉은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제11조(임용제청) ① 총장은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.
 - ②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인사기록카드(명함판사진 첨부) 2통
 - 2. 사진(신분증명서 교부용) 2매
 - 3. 학력증명서(졸업 학위증명서) 3통
 - 4. 호적등본 2통
 - 5. 경력증명서(재직기관 마다) 각 3통
 - 6. 신원진술서 5통
- 제12조(임용시기) 신임교원은 3월 1일, 9월 1일자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3조(임용계약) ① 신규임용은 임용계약에 의하며, 임용계약은 임용당시 개별적으로 체결한다.
 -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 - 1. 근무기간
 - 2. 보수(적용 직명 및 호봉)
 - 3. 책임강의시간
 - 4. 근무기간 만료후 재임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한다.
 - 5. 기타 임용조건
- 제14조(임용직위) ①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별 최저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연수는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연구업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조정할 수 있다.
 - 1. 교수 : 16년

부교수: 11년
조교수: 5년
전임강사: 2년

② 특수 분야의 경우 현장실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07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.

전공 분야	심사항목	배점 (만점)	평가내용		심사 점수
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	학위논문의 질적 수준	20	A(최우수)(20) B(우수)(15) C(보통)(10)	①박사학위 논문이 전공과 불일치하는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박사학위는 일치하여도 석사학위가 일 치하지 않으면 5점 감점 ③평가대상에서 제외 여부는 전공심사위 원 2/3이상의 불일치 판정으로 결정한 다.	
	학문적 탁월성	20	①전공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학문발전 탁월성이 인정될 경우 20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. ②학문적 소양과 자질은 충분하지만 외국에서 학위를 받느 라 연구실적이 저조한 자에 한함.		
	최근 4년이내 전공영역과 일치하는 연구실적량	20	논 문	①SCI, SSCI, A&HCI급 게제(발표): 5-10점 ②국외 유명 학술지 게제(발표): 1매당 0.5-2점 ③국내 학진 등재(후보)학술지(발표): 1매당 0.5-2점 ④한국신학등 베뢰아관련 논문집 : 1매당0.5-2점 ①해외 해당분야 Major 전문출판사:	
			전문연구서	10-15점 ②국내 출판 해당분야 전문연구서:1-5점 ③해당분야 전문연구번역서:1-3점	
경력		10	①4년제 대학교수 1년에 2점 ②2년제 대학교수 1년에 1점 ③2년제 이상의 대학 시간강사 2년에 1점 ④공립유치원(유아교육에 한함).초.중.고등학교 교사 2년 에 1점 ⑤담임목회1년 1점, 협동.부목사 2년 1점(신학전공자에 한함). ⑥국가 및 공공 전문연구소 연구원 1년에 1점		
면접		20	면접위원의 평균점수		
기타평가		10	①35세 미만은 5점을 가산한다. ②국가나 해당전문기관의 포상: 5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.		
계		100			